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111
----------	-----

제출년월일 : 1992년 9월 17일

제출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1. 提案經緯

가. 19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종태위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

2. 提案理由

1. 현행 조례상 제12조 제2항의 직인중 각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을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각상임위원회 위원장인과 사무국장인의 한번 길이를 1.8cm에서 2.1cm로 변경하고자 함.

3. 主要骨子

가. 직인의 종류 (안 제2조 제2항)

1. 의회의장인
2.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3. 사무국장인

나. 별표 "공인의 규격"중 영등포구의회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인의 한번의 길이를 당초 "1.8cm"에서 "2.1cm"로 하고자 함. (안 제4조 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인
2.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3. 사무국장인

제 4 조 별표 공인의 규격중 영등포구의회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의 한변의 길이를 "1.8cm"에서 "2.1cm"로 하고, 영등포구의회사무국장인의 한변의 길이는 "1.8cm"에서 "2.1cm"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 2 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p> <p>② 청인 및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인 : 영등포구의회인 2. 직인 : 의회의장인,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사무국장인 <p>③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 4 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 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45%;">구</th> <th style="width: 15%;">분</th> <th style="width: 15%;">한변의 길이</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인</td> <td>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6cm</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인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직인</td> <td>영등포구의회의장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4cm</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인쇄</td> </tr> <tr> <td>영등포구의회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8cm</u></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인쇄</td> </tr> <tr> <td>영등포구의회사무국장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8cm</u></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인쇄</td> </tr> </tbody> </table>		구	분	한변의 길이	비 고	청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		3.6cm	목인쇄	직인	영등포구의회의장인		2.4cm	목인쇄	영등포구의회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u>1.8cm</u>	목인쇄	영등포구의회사무국장인		<u>1.8cm</u>	목인쇄	<p>제 2 조 (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의장인 2.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3. 사무국장인 <p>③ (현행과 같음)</p> <p>제 4 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 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45%;">구</th> <th style="width: 15%;">분</th> <th style="width: 15%;">한변의 길이</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인</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직인</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2.1cm</u></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2.4cm</u></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	분	한변의 길이	비 고	청인	현행과 같음				직인	현행과 같음					<u>2.1cm</u>		<u>2.4cm</u>
	구	분	한변의 길이	비 고																																															
청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		3.6cm	목인쇄																																															
직인	영등포구의회의장인		2.4cm	목인쇄																																															
	영등포구의회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u>1.8cm</u>	목인쇄																																															
	영등포구의회사무국장인		<u>1.8cm</u>	목인쇄																																															
	구	분	한변의 길이	비 고																																															
청인	현행과 같음																																																		
직인	현행과 같음																																																		
		<u>2.1cm</u>																																															
																																																		
		<u>2.4cm</u>																																															